

개정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김 옥 식 해양수산부 사무관

들어가며

어항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어항개발사업 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하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



하는 관계자의 능력 향상 및 어촌·어항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어촌·어항법」 개정(법률 제12543호, 2014. 3. 24 공포, 9. 25.)이 시행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같은법 하위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항시설을 수송시설 및 어항정화시설 등으로 정하고,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업무 및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는 등 어촌·어항의 정비·개발 및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을 정하고, 어촌·어항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어항제도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다.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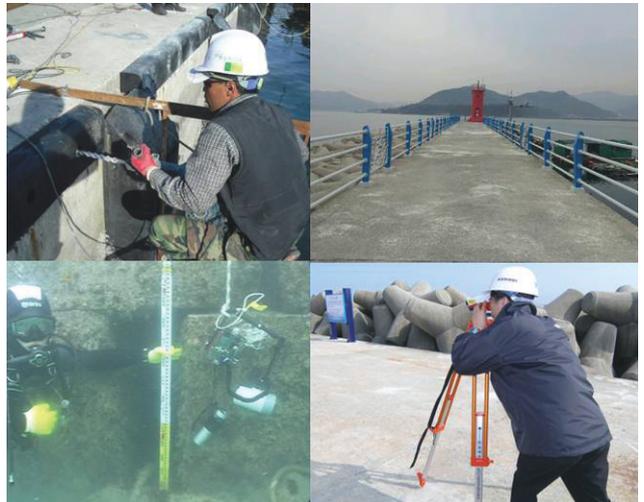
1. 어항의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 적용대상 어항시설 명시(안 제27조의2 신설)

- 개정법률 제24조제2항(법률 제12543호, 2014. 3. 24)으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나 시공, 안전관리에 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에 방파제 등 기본시설 이외 추가 필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중요 기능시설을 적용대상 범위에 규정
- 어항시설 중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 시설 이외에 수송시설,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표지, 어항정화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중요 기능시설을 기술기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 수송시설,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표지, 어항정화시설, 부지



2.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설립목적 및 법적 사업범위에 따라 수행중인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위탁근거 명확화 (안 제44조제2항)

-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개정법률 제57조·제58조(법률 제12543호, 2014. 3. 24)에 따라 공공기관인 협회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한 역할과 현재 수행하는 사업에 맞게 위탁근거를 명확화
- 어항시설 안전점검 위탁업무에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항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점검 이외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의한 어항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추가 규정함
-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해 위탁중인 '어항청소선'은 개정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명칭을 '어항관리선'으로 수정함
- 현재 보조사업으로 수행중인 '어항시설의 유지보수'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지원' 업무를 개정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로 명확히 규정함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또는 항·포구가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안 제10조제3항 신설)
 - 최근 연육교 또는 연도교 설치 등으로 도서지역의 어항이나 항·포구가 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어선척수 등 규모에 의한 어항지정기준에 불구, 효율적인 어항개발을 위해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척수, 위판고 등에 따른 국가어항, 지방어항 등 어항지정 기준(법 제10조제2항 별표)에 불구하고 어항 또는 항·포구가 사회·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 중요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어항개발계획수립과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시 중복되는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2항)
 -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당해 어항을 이용하는 공공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후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다시 공공단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공공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되, 법 제23조에서 지정권자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로부터 투자계획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 등 규정(안 제12조의2 및 별표2 신설)
 -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항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14. 3. 24 「어촌·어항법」 제24조제4항(법률 제12543호)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
 -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수역시설)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실시시기와 안전등급 기준을 정함
 - 안전점검 결과는 지정권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년도 3월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4. 지방자치단체의 어항관리규정(조례)에 어항 내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안 제18조제5호)
 - 개정법률 제24조제4항(법률 제12543호, 2014. 3. 24)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어항 내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어항 내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기간 종료사실 사전 고지(안 제24조제3항 신설)

-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종료일을 사전 고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연장신청의 행정절차 이행 편의를 제고
-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30일전에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

6. 어촌·어항 관계자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 개정법률 제49조의3제2항(법률 제12543호, 2014. 3.24)에 따라 어촌·어항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어항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교육·훈련 기본방향, 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의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치며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절차와 규제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이번 「어촌·어항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시켜 수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촌이 국민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촌·어항법」은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근간의 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